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73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5. 24.
4. 회부일자 : 2019. 5. 30.

II. 개정이유

- 2019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특수학교 1개교(사립 특수학교의 공립전환), 단설유치원 4개원(매입형유치원),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고,
- 유치원 1개원의 한시적 위치이전을 반영하며,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 학교 3개교의 도로명주소를 정비 및 변경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1. 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1)

위치 정비: 1개교(도로명주소로 변경)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향동초등학교(구로구 연동로 178)

2. 중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2)

위치 정비: 1개교(도로명주소 변경)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길음중학교(성북구 길음로 144)

3. 특수학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5)

신설: 1개교

○ 북부교육지원청

- 서울도솔학교(도봉구 평화로15번길 9-25)

4. 유치원 명칭 및 위치 (안 별표 7)

신설: 6개원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오류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구로구 서해안로24길 22)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서울고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강동구 구천면로93길 20)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서울금낭화유치원(강서구 금낭화로 35)

- 서울수명유치원(강서구 수명로1길 76)

- 서울신정유치원(양천구 신정로7길 81-4)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서울좋은소리유치원(성북구 길음로13길 29)

위치 이전: 1개원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서울상도유치원(동작구 만양로3길 48)

위치 정비: 1개원(도로명주소로 변경)

○ 남부교육지원청

- 서울향동유치원(구로구 연동로8길 15)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19.4.24. ~ 5.14.)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3]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733호로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자로 특수학교 1개교와 단설유치원 4개원 및 병설유치원 2개원을 신설하고, 4개교(원)의 위치이전 및 주소정비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병설유치원 신설의 건

- 오류남초병설유치원과 고일초병설유치원 신설의 건은 각각 초등학교 내에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여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설유치원이 신설될 해당 권역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률이 15.4%(남부1), 12.4%(강동송파5)에 불과하고, 공립유치원을 희망하는 취학수요는 높은 상황으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2019년 5월 기준으로 오류남초병설유치원의 공정률은 75%이나 고일초병설유치원의 공정률은 55%로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준공시기를 고려하여 공사일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사로 인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병설유치원 유아수용전망

학교명	취학권역		유치원 정원			유아 수용률 (%)	취학수요(명)	
	행정동	취원대상 유아수(명)	설립유형별	시설수 (개)	정원(명)		공립 희망	공립 과부족
오류남초병설	남부1 (오류1~2동, 수궁동)	2,554	공립유치원	3	394	54.7%	1,649	△1,255
			사립유치원	9	1,003			
			계	12	1,397			
고일초병설	강동송파5 (상일동, 강일동)	1,036	공립유치원	1	128	107.9%	612	△484
			사립유치원	4	990			
			계	5	1,118			
서울 취학권역 평균		2,144.2	공립유치원	2.4	184.5	43.8%	1,247.3	△762.8
			사립유치원	6	754.5			
			계	8.4	939			

나. 단설유치원 및 특수학교 신설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학교신설은 매입형유치원 4개원,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에서 공립 특수학교로 전환된 도솔학교(인강학교) 1개교가 금년 9월 1일에 개교하기 위한 것인바, 금번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심의가 동시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금번 회기에 제출되었고 매입형유치원의 경우 그 예산이 매입비용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은 학교설립에 관한 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한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시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관련 안건을 이와같이 동시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신설되는 학교의 교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제4조1)에 따라 유치원(단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교명제정자문위원

1)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

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시 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수명유치원 등 4개원과 도솔학교의 교명은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학교명 심의 결과

가칭 학교명	교명제정자문위원회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선정명칭	심의일	선정명칭	심의일
수명유치원	수명유치원	2019.4.4	수명유치원	2019.4.11
방화유치원	새별유치원	2019.4.4.	금남화유치원	2019.4.11
신정유치원	넓은들유치원	2019.4.4.	신정유치원	2019.4.11
좋은소리유치원	좋은소리유치원	2019.4.3	좋은소리유치원	2019.4.11
인강학교			도솔학교	2019.2.26

다. 위치 이전 및 주소정비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위치 이전 및 주소정비의 건은 총 4개교로 상도유치원 1개원의 위치이전과 조례에 잘못 반영된 3개교의 도로명 주소 및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도유치원은 지난 2018년 9월 유치원 건물이 일부 붕괴됨에 따라 유아들의 교육활동 정상 운영을 위해 폐원예정이었던 인근 동아유치원을 2022년까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건은 상도유치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 그 외에 향동유치원, 향동초, 길음중학교의 건은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조례에 잘못되어 있는 주소를 일괄정비한 것으로,

향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의 학교 위치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검토 등을 통해 학교 위치가 실제와 달리 잘못 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